

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

개정을 위한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의 개정)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,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
제2조(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의 개정)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4제2항 후단 중 “**우편투표**”를 “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,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

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
제22조의10의 제목 “(**심의결과의 시행**)”을 “(**심의결과의 시행 등**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립·공립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·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
- ③ 국립·공립 유치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12(시정명령) 관할청은 국립·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·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22조의13을 제22조의14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22조의13) 제4항 전단 중 “**제22조의4제2항·제3항·제5항·제6항 및 제22조의9**”를 “**제22조의4제2항·제3항, 제5항부터 제7항까지, 제22조의9, 제22조의10제2항 및 제3항**”

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**“사립유치원”으로**”를 “**“사립유치원”으로, “심의”는 “자문”으로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22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관할청은 사립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- 제22조의13(조례 등에의 위임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·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,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9조(위원의 선출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9조(위원의 선출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,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</u>
<u>⑤ ~ ⑦</u> (생략)	<u>⑥ ~ ⑧</u> (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)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의4(위원의 선출 등) ① (생략)	제22조의4(위원의 선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학부모위원회는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<u>우편투표</u>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</u> 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,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⑤·⑥ (생략)	⑥·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
제22조의10(심의결과의 시행) (생략)	제22조의10(심의결과의 시행 등) ①

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국립·공립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·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
③ 국립·공립 유치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12(시정명령) 관할청은 국립·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·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

<u>제22조의12</u> (생략) <u>제22조의13</u>(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선출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3, <u>제22조의4제2항·제3항·제5항·제6항 및 제22조의9</u>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립·공립유치원"은 "<u>사립유치원</u>"으로, "시·도의 조례"는 "정관 또는 유치원규칙"으로 본다. ⑤ (생략) <u><신설></u> ⑥ (생략)	을 명할 수 있다. <u>제22조의13</u> (현행 제22조의12와 같음) <u>제22조의14</u>(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제22조의4제2항·제3항, 제5항부터 제7항까지, 제22조의9, 제22조의10제2항 및 제3항을----- -----, -- "<u>사립유치원</u>"으로, "<u>심의</u>"는 "<u>자문</u>"으로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 ⑥ 관할청은 사립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	
연 락 처	(044) 203 - 7083